

의안번호	제 264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이정범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4월 11일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이정범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4월 11일

발의자 : 이정범·김현문·박병천
박용규·박재주·유상용
이윅희 의원

1. 제안 이유

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·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 ~ 안 제2조)

나.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
다. 조례의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4조~제5조)

라. 학교복합시설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마.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- 바.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- 사. 학교복합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- 아. 학교복합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- 자. 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)
- 차.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12조)
- 카.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비용추계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
- 다. 관계부서 협의 :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·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2. “학교복합시설”이란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내 학교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.
3. “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”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 및 충청북도 내 시장·군수(이하 “시장·군수”라 한다)와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·군수와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사회 간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공립학교와 「사립학교법」 제2조의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하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적용한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제6조(기능)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
2. 방과후학교·초등돌봄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
3.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·예술 활동 지원
4. 학생 및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
5. 지역사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
6. 지역 커뮤니티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
7. 구도심, 농·산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
8.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
9.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7조(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 등) ①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교육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학교복합시설의 규모, 용도, 재원,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
2.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
3.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
4.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

②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전에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8조(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) ①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건축설계를 실시할 때, 학생 사용시설과 주민 이용시설의 출입구 및 이동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여야 한다.

② 학교복합시설은 「건축법」 제53조의2에 따른 범죄예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,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.

③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9조(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위탁) 학교복합시설 운영주체로 결정된 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 충청북도 또는 시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

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충청북도 또는 시·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
3. 문화·체육·복지·교육 분야에서 운영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
제10조(학교복합시설 개방 등)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육 및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. 다만, 학교 행사·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과시간 내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을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.

③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.

1. 학교복합시설별 이용시간, 사용료, 이용수칙
2. 프로그램 안내, 수강료
3. 그 밖에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

④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기관 간 협의) ① 교육감과 도지사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우 「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·조정할 수 있다.

- 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, 충청북도 또는 시군,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(이하 “운영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
2.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·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
3. 학교복합시설의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

-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제13조(지원)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 또는 학교복합시설 운영 수탁자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.

- 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·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

1. 학교복합시설 설치 협의 등에 관한 사항
2.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3.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□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1. 3. 25.] [법률 제17959호, 2021. 3. 23., 일부개정]

제5조(학교복합시설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3. 23.>

1.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(이하 “감독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

2.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3. 23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기획,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,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3. 23.>

④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·개축,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, 재정 부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,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. <신설 2021. 3. 23.>

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에 따른다. <신설 2021. 3. 23.>

⑥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1. 3. 23.>

제6조(학교복합시설의 운영·관리 원칙)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학생 또는 지역 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,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3. 23.>

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자는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및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3. 23.>

③ 학교복합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·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,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3. 23.>

④ 학교복합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,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3. 23.>

⑤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. 3. 23.>

제7조(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) 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학생, 학부모, 교직원, 지역주민, 교육 및 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

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(이하“운영협의회”라 한다)를 각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.

② 운영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제8조(학생의 안전 확보) ① 학교복합시설은 「건축법」 제53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, 학생과 지역주민 등 학교복합시설 이용자 간의 동선이 분리되는 등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.

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1. 3. 23.]

제10조(교육경비 보조의 특례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(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)에게 보조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1. 3. 23.]

□ 건축법

[시행 2022. 4. 20.] [법률 제18508호, 2021. 10. 19., 일부개정]

제53조의2(건축물의 범죄예방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,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4. 5. 28.]

□ 초·중등교육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6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 <개정 2019. 12. 3.>

1. 초등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[전문개정 2012. 3. 21.]

제31조(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10. 18.>

② 국립·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,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.

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2. 3. 21.]

[시행일: 2023. 4. 19.] 제31조

□ 사립학교법

[시행 2022. 8. 11.] [법률 제18372호, 2021. 8. 10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1. 8. 10.>

1. “사립학교”란 학교법인,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(私人)이 설치하는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2. “학교법인”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·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.
3. “사립학교경영자”란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(학교법인은 제외한다) 또는 사인을 말한다.
4. “임용”이란 신규채용, 승진, 전보(轉補), 겸임, 파견, 강임(降任), 휴직, 직위해제, 정직(停職), 강등, 복직, 면직,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6. 2. 3.]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「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 제13조(지원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안은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에 해당됨